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83

발의연월일: 2022. 5. 23.

발 의 자:하영제·김승수·박덕흠

김선교 • 송석준 • 박대출

서정숙 · 윤재갑 · 정우택

김용판 · 김기현 · 하태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
	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u>할 수 있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
	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